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우리 자유적금」

·상품특징 : 약정기간 동안 가입자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수시로 적립할 수 있는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u>네용는 구성에서는 중앙 또는 중시에 떠답니다.</u>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단, 일반은행, 증권사, 보험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체신관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은 가입할 수 없음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제한없음			
적립한도	• 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			
적용금리	• 적용금리 :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아래의 이율은 2024.12.12. 기준 이율이 통장에 인자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인터		기율이며 신규 당시의 이율은 실제로 : (인터넷 가입 시는 가입화면에서 확인)		
기본이율	계약기간	기본금리		
(세금납부 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 2.05%		
(세급급구 년 '24.12.12.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25%		
	2년 이상 3년 미만	연 2.25%		
	3년 이상	연 2.30%		

	(**)우리은행 ************************************		
구 분	내 용		
우대이율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 0.3%p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상품 가입시 연 0.1%p 우대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이고 자동이체 적립실적이 11회 이상인 경우 연 0.2%p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이자계산방법	• 자유적립식 :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12.12.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경과기간이율1개월이내만기시점 약정이율 × 50%1개월초과 ~ 6개월 이내만기시점 약정이율 × 30%6개월 초과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약정이율 : 만기(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		
만기이자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 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1회차 2회차 3회차 12회차 만기일 입금금액 × 이자율 ×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 이자율 × 예치일수/계약기간 :		

	(주제우리은현 (주제)			
구 분	내 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이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x -	보유기간 이율 비고			
중도 해지이율	3개월미만 연 0.1 %			
에시어크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 50% × 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기본이율 × 70 % × 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율			
	9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율 × 80 % × 보유일수/계약일수 연 0.15 %			
	11개월이상 기본이율 × 90% × 보유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이율 산출근거	지본이용×50% 기본이용×70% 기본이용×80% 기본이용×80% 기본이용×90% ×보유일수/계약일수 ×보유일수/계약일수 ×보유일수/계약일수 기개월 만기일 왕의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적립제한	• 계약기간 2/3이상 경과시 기 납입한 금액의 1/2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음. 다만, '우리 펀드&적금 적립이체서비스'로 이체된 금액은 적립한도에서 제외됨 • 신규포함 999회까지 입금 가능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이 예금보형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합산) 보호됩니다.			

		(☆) 우리은행			
구 분		내 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세제혜택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10	부과될 수 있음			
-11 011 41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ㅂ하세기	71 🗠	•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지급 가능			
분할해지	가능	• 초입금을 제외한 지정 입금 건별로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건에 대해서 중도해지이율 적용			
양도 및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당고 ᆽ 담보제공	가능	연명의 성격을 받는 경우 경포 및 물년물경의 기정의 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까지 가능			
1-10	• 은행이 금융소비	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위법계약	여부를 통지하거	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 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해지권	사유 없이 금융술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왜곡아여 실명아거나 중요한 사양에 대한 실명을 구낙한 경우(제19소 제1양, 제3양),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요구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경으 에그거래기보야과 제a조이2 호면에그 및 추여에			
휴면예금 및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출연 출연					
로 다					
	· 유년에 라는 유년 · 가능합니다.	L O L — - - - (www.sicepinoney.or.ki/2 0 M			
연계·제휴서비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 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